

서울고등법원 2022. 3. 17 선고 2021나202649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

피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훈

변 론 종 결 2022. 1. 20.

판 결 선 고 2022. 3. 17.

제1 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7. 1. 선고 2020가합38372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유한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4. 27. 체결된

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(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,

예비적으로 피담보채무의 불성립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유한회사 B을 대위하여 위

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,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 중

사해행위 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[고쳐 쓰거나 삭제 추가하는 부분]

○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을 삭제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“원고는”부터 제18행까지를 삭제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의 “3.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”을 “3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”으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7면 제17, 18행의 각 “이 법원”을 모두 “제1심법원”으로 고쳐 쓴다. ○ 제1심판결 제9면 제20행부터 제10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
『살피건대, 을 제15, 16, 1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P의 증언에 의하면, 위 등기 설정일인 2017.

4. 11.과 말소일인 2017. 12. 12. 사이의 기간 동안 2017. 4. 20.자 및 2017. 9. 29.자로 B과 피고

사이에 각 계약서(을 제15, 16호증)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에 ‘B은 피고가 대여해주는 금액을

보증하기 위해 B 소유의 회사 부지를 근저당설정을 해주기로 한다. 단, B이 금융권에서 추가대출 및

기타 사유로 인해 피고의 근저당설정 해지가 필요한 때에는 B은 일시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을

해지해주고 다시 후순위로 설정기로 한다’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나 위

사실만으로는 피고가 B이 C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기 위해 2017. 4. 11. B으로부터 설정받은 위 근저당권을 일시적으로 말소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』

○ 제1심판결 제10면 제9, 10행의 “근저당권 2건의 채권최고액 합계 600,000,000원”을 “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00,000,000원”으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10면 제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.

『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2017. 4. 11.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기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,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(대법원 2001. 5. 8. 선고 2000다66089 판결,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다20864 판결 등 참조)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할 수 없다.』

○ 제1심판결 제11면 제13행의 “나.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”를 “나. 사해행위취소”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12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
『2)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마용주, 판사 임종효, 판사 주선아

(별지)

목 록

1. 서울 은평구 Q 대 859㎡
2. 서울 은평구 Q(도로명주소: 서울 은평구 R) 지상
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(평스라브)지붕
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주택
1층 204.17㎡
2층 83.35㎡, 끝.

